

2021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25블록 1롯데 업무시설 신축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	심의일자	2021. 3. 16.(서면심의)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		
	지번 25블록 1롯데	관련지번	
건축물현황	대지면적 26,287.5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유통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
	건축면적 17,320.89㎡	건폐율 65.8902%	층수 지하 : 4층/ 지상 : 49층
	주용도 업무시설(오피스텔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6동
	최고높이 155.15m	용적률 698.59%	연면적 합계 256,601.32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소방분야)관련	○ 향후 성능위주설계 신고 보고서 제출 시 사전검토 보완추가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 및 도서 제시 바람	
	(행정)사항	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	
심의결과	[<input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

2021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(구조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	심의일자	2021. 3. 16.(서면심의)
건축종별	[<input type="checkbox"/>] 신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증축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수선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		
	지번 491-3	관련지번 491-4, 491-5, 493, 492-1	
	대지면적 13,029.5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2,894.0782㎡	건폐율 22.2117%	층수 지하 : 4층/ 지상 : 29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4동
	최고높이 83.35m	용적률 196.94%	연면적 합계 84,785.3839㎡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
	(구조분야)관련	○ 특수구조물이므로 시공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으시기 바람	
	(행정)사항	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	
심의결과	[<input type="checkbox"/>] 원안 의결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재검토 의결 [<input type="checkbox"/>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